

국 무 총 리 향 정 조 정 실

국무총리 지시 제 16 호

국무총리 지시 제 16 호 폐지 70-2012) 1973. 8. ④  
수신 : 수신처 참조 (82.3.9)  
제목 : 해외공무 여행자 항공권 구매제도에 관한지시

1. 해외 공무 여행자의 항공권은 대한 여행사를 통하여 구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간 일부 해외 여행자가 일반 항공권 매매업자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는 사례가 있읍니다.
2. 대한여행사는 국제관광공사에서 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보아 정부의 시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관광선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여행사로 계속 발전되어야 할것이며
3. 해외 공무 여행자의 항공권 구매 창구가 다원화될 경우에는 군소항공권 매매업자의 과장 경쟁으로 할인료(Rebate)를 둘러싼 공무 여행자들과 항공권 매매업자간의 무질서한 접촉과 고섭으로 인하여 자국기(自國機)의 이용도로 저하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재지시하니 관계기관은 이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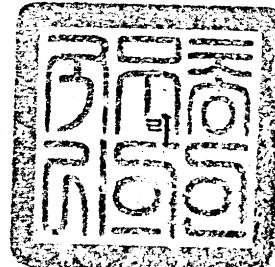
국무총리 지시 제 16 호

다음

1. 해외에 상주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출, 귀국, 국제회의 참석 그리고 각종 원조자금에 의한 해외기술훈련이나 일반 공무로 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임직원 포함)이 해외로 여행하게 되는 때에는, 그 왕복 항공권은 주식회사 대한 여행사를 통하여 구매토록 할것.
2. 교통부는 대한여행사로 하여금 공무 여행 허가통보에 의한 지시와 일치하는 최단 여행 코스의 항공권을 발급케하고, 대한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노선에는 대한항공의 항공권을 발급토록 지도 감독할것.

끝.

국 무 총



수신처 : 가 (7, 10-43) 나 (1-11)